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정기특별교통대책의 시행,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특별교통대책”이란 매년 특정 시기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 급증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중심으로 수립하는 특별교통대책을 말한다.
 - 가. 설 연휴기간
 - 나. 추석 연휴기간
 - 다. 하계 휴가철기간
2. “임시특별교통대책”이란 제1호이외의 경우에 수립하는 특별교통대책을 말한다.
3. “교통관련기관”란 육상·해상 또는 항공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사·공단 및 단체 등을 말한다.

4. “근무자”란 다음 각 목과 같이 필수요원, 증원요원 및 파견요원으로 구분한다.

가. “필수요원”이란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원으로서 근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근무명령을 받은 국토교통부 직원을 말한다.

나. “증원요원”이란 비상사태 등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수요원 외에 추가로 증원한 근무요원을 말한다.

다. “파견요원”이란 특별교통대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기관 및 국방부 등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에 파견한 근무요원을 말한다.

5. “상시연락체계”란 유무선통신망, 인터넷, 기타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대방과 언제든지 명령, 지시, 보고, 전파 등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정기특별교통대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시특별교통대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거나 이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제4조(특별교통대책 기간설정) ① 특별교통대책기간은 교통수요의 발생, 현장의 교통상황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조정한다.

②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은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날(이하 “정기대책시작일”이라 한다)로부터 최소한 50일 전에 미리 확정하여야 한다.

1. 설·추석 연휴기간 : 특별교통대책기간은 5일간으로 설정한다. 다만, 설·추석 연휴기간이 주말·공휴일 등과 연결되는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2. 하계 휴가철기간 : 특별교통대책기간은 매년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설정한다. 다만, 대책기간의 시작이나 끝나는 날이 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이 기간을 포함한다.

③ 임시특별교통대책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설정한다.

제5조(정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대책 시작일로부터 1주일 전에 정기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제8조에 따른 교통수요 조사·분석결과와 제9조에 따른 교통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야별 정기특별교통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특별교통대책이 확정되면 교통관련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언론매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정기특별교통대책의 내용) 정기특별교통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여건의 현황과 전망
2. 교통수요의 분산대책 및 조정대책
3. 교통수단의 운행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증회 및 노선조정
4. 전용차로의 지정·운영, 대체교통로의 지정 등 교통시설운영 개선 대책
5. 교통안전대책
6. 그밖에 정기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교통수요 조사·분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특별교통 대책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수단별 이동교통량 등 교통수요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 조사·분석업무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수요 조사·분석 전담기관(이하 “교통수요 조사·분석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지정·운영한다.

③ 교통수요조사는 본 조사와 간이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본 조사의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대상 : 전국 5,000세대에서 15,000세대까지의 범위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조사방법 : 전화설문조사, 통계문헌조사, 방문조사, 인터넷조사 등

3. 조사내용

가. 사회경제지표

나. 교통시설현황 및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현황

다.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여행 여부, 이동일자, 이용교통수단 등 통행패턴 및 특성

라.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간이조사의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대상 : 본 조사에서 여행계획이 있었거나 미정이었던 인원

2. 조사방법 : 전화설문조사, 방문조사, 인터넷조사 등

3. 조사내용 :

가. 여행계획 여부, 이동일자 및 시간대, 이용교통수단·도로별 인원 비율 등

나.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교통수요 조사·분석 전담기관은 교통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교통수요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수요 조사·분석 전담기관은 효율적인 교통수요 조사·평가를 위하여 교통관련기관 및 관련업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관련기관

및 관련업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교통수요 조사·분석결과 제출 등) ① 교통수요 조사·분석 전담

기관은 교통수요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조사·분석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조사 : 정기대책시작일로부터 2주 전

2. 간이조사 : 정기대책시작일로부터 10일 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수요 조사·분석결과를 제출 받은 때에는 이를 교통관련기관에게 통보하고, 교통관련기관은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정기특별교통대책의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분야별 정기특별교통대책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교통관련기관과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등 관계행정기관에 정기대책시작일로부터 45일 전에 분야별 또는 소관별 정기특별교통대책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요청받은 교통관련기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은 분야별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정기대책시작일로부터 2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야별 정기특별교통대책 수립에 제8조의 교통수요 조사·분석결과가 필요한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제출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관련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정기특별교통대책의 시행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수송능력 증강) ① 교통관련기관 또는 교통운

영자는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버스, 열차, 여객선,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능력을 최대한 증강할 수 있도록 해당 교통수단을 투입·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통관련기관 또는 교통운영자는 심야에 복귀하는 이동인원 등 특별교통수요에 대비하여 대중교통의 심야 연장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소통 확보) ① 교통관련기관은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검토·강구하여야 한다.

1. 전용차로 지정·운영
2. 고속도로 진출입로 통제
3.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스 조절
4. 공사 중인 국도·고속도로의 임시개통 또는 조기개통
5. 그 밖에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통관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이용자 등 일반국민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2조(교통수요 분산) ① 교통관련기관은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특정시간대에 교통량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검

토·강구하여야 한다.

1. 자체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도로변 전광판,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교통 혼잡, 우회교통로 등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
2. 국도·고속도로에서의 우회도로 지정·안내
3. 철도 등 대체교통수단의 적기 적절한 운영
4. 그 밖에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통관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이용자 등 일반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휴게소·터미널주변 등 교통관리) ①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

교통관련기관은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휴게소 주변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검토·강구하여야 한다.

1. 상습정체구간 휴게소의 지정·관리
2. 상습정체구간 휴게소의 주차 공간 확충
3. 상습정체구간 휴게소 주변의 부가차로 설치 등 필요한 조치
4. 상습정체구간 휴게소의 상근인력을 주차지도 및 현장정리요원으로 활용방안
5. 상습정체구간 휴게소의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을 위한 견인차 추가 배치
6. 그 밖에 휴게소 주변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한국철도공사 등 교통관련기관은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버

스, 철도, 항공, 해운 등의 환승거점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검토·강구하여야 한다.

1. 철도역사(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주변의 원활한 연계환승교통 시스템 확보, 연계환승정보 제공 및 교통질서 유지
2. 공항·여객선 터미널 주변의 원활한 연계환승교통 및 접근교통시스템 확보 및 교통질서 유지
3. 고속버스터미널 또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원활한 연계환승교통 확보, 불법 주정차방지 등 교통질서 유지
4. 그 밖에 주변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비상교통수단 확보)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통관련기관은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수습을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헬리콥터 등 비상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교통안전관리 및 편의제공 등) ① 교통관련기관 또는 교통운영자는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검토·강구하여야 한다.

1.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 터미널 등 다중이용 편의시설의 안전점검
2. 사업용 자동차, 철도, 여객선,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정비·점검
3. 사업용 자동차, 철도, 여객선,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운전자, 종사원 안전교육

4. 폭설, 강풍 등 기상 악화시 운항통제
 5. 비상시 구급·구난체계 구축
 6. 도로변 임시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
 7.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항만 및 공항대합실 등 청결유지 및 서비스 향상
 8. 해상항로상 위험물 항로순찰 등 순찰강화
 9.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 및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통관련기관은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기상 악화, 응급의료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연락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장 특별교통대책본부의 설치

제16조(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분) ① 특별교통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한다.

1.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이하 “정부합동대책본부”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적, 전략적, 체계적으로 특별교통대책업무를 지휘·조정 및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교통대책본부
2. 분야별 특별교통대책본부(이하 “분야별 대책본부”라 한다) : 교통관련기관이 해당 분야별·교통수단별 또는 소관별로 교통정보 안내, 교통운영관리 등 구체적인 특별교통대책업무를 집행·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교통대책본부

- ②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하계 휴가철 정기특별교통대책 기간에는 정부합동대책본부를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아니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시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부합동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교통관련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분야별 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설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교통관련기관의 장은 분야별 대책본부를 운영함에 있어 정부합동대책본부의 운영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17조(정부합동대책본부의 설치장소) ① 정부합동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에 설치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합동대책본부를 특정한 교통관련기관에 설치하거나 특정한 교통관련기관의 분야별 대책본부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분야별 대책본부는 교통관련기관별로 해당기관 또는 현장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정부합동대책본부 구성)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으로 한다.

② 정부합동대책본부에는 상황실을 두며, 상황실은 실장 1인과 필수요원 5인 및 파견요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황실장은 [별표1]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속의 4급 이상의 공무원 가운데 본부장이 근무를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대책본부 설치 첫날 주간 상황실장은 특별교통대책 준비 상황보고 총괄 등을 위해 종합교통정책관으로 지정한다.

1. 상황요원(2인) :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자동차국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속 5급 공무원 1인 및 주무관급 공무원(6급부터 7급까지) 1인

2. 도로요원 : 도로국 소속 5급이하 공무원 1인(사무운영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3. 철도요원 : 철도국 소속 5급이하 공무원 1인(사무운영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4. 항공요원 : 항공정책실(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 및 대구경북신공항건설추진단을 포함한다) 소속 5급이하 공무원 1인(사무운영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⑤ 파견요원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타 기관의 파견직원을 말한다.

⑥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 포상 등 인사상 우대한다.

⑦ 본부장은 정부합동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건 변화에 맞게 증원요원 편성 등 탄력적으로 근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정부합동대책본부의 업무분장) ① 상황실장은 도로·철도·항공·해운의 교통상황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기특별교통대책의 상황총괄·조정·관리
2. 대내외기관의 상황보고·협조·언론 홍보. 다만, 교통정보 및 안내 기능은 분야별 대책본부로 위임한다.
3. 시외버스(고속·일반)·전세버스의 수송력 증강, 교통수요 및 수송 인원 파악
4. 버스 등 교통현황 파악 및 조정
 - 가. 고속버스 승차권 예·발매 현황
 - 나. 고속버스 운행 현황
 - 다. 전국(서울발) 교통수단별 수송 실적
 - 라. 교통사고발생 현황 등
5. 광역버스 및 교통수단 간 환승체계 현황 파악
6. 설·추석연휴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태풍·폭설 등 기상이변 발생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육상부문)
7. 기타 정부합동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로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에서의 교통소통 및 교통량 분산 총괄·조정
2. 도로에서의 교통현황 파악 및 조정
 - 가. 국도·고속도로의 도로교통량 현황
 - 나. 고속도로 주요구간의 소요시간

다. 국도·고속도로의 임시개통 및 준공개통구간 현황

라. 국도·고속도로의 우회도로 현황

마. 실시간 고속도로의 교통상황 등

3. 도로에서의 통행제한, 파손된 도로 응급복구 등 지시

4. 설·추석연휴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태풍·폭설 등 기상이변 발생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도로부문)

5. 기타 도로분야에 있어서의 정부합동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철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철도에서의 정기특별교통대책 상황총괄·조정

2. 열차 현황 파악 및 조정

가. 열차의 수송력 증강 및 수요 동향

나. 열차 승차권 발매 현황

다. 열차 운행 현황

라. 철도시설 및 열차의 비정상운영 실태 등

3. 설·추석연휴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태풍·폭설 등 기상이변 발생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철도부문)

4. 기타 철도분야에 있어서의 정부합동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항공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에서의 정기특별교통대책 상황총괄·조정

2. 항공교통 현황 파악 및 조정

가. 항공기의 수송력 증강 및 수요동향

나. 항공권 예·발매 현황

다. 항공기 운행 현황

라.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비정상운영 실태 등

3. 설·추석연휴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태풍·폭설 등 기상이변 발생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공항, 항공) 등

4. 기타 항공분야에 있어서의 정부합동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파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기관과 정부합동대책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2. 정기특별교통대책 추진관련 해당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항 파악

3. 정부합동대책본부의 운영 및 정기특별교통대책 추진과 관련되는 해당기관의 업무추진

4. 기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정부합동대책본부의 운영

제20조(복무 및 근무지원) ① 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본부장의 지시를 이행하는 등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의 근무는 주·야간으로 구분하고 주간은 당일 09:00부터 2

1:00까지로 하고, 야간은 당일 21: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본부장은 상황실장 및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상황 파악, 업무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일부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무자에 대하여 정상근무일중 1일 휴무 또는 당직근무 1회 면제를 명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관련기관 등의 파견요원에 대하여 대책기간 종료 후 해당기관의 정상근무일중 1일의 휴무를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야간 및 휴일에 근무하는 상황실장 및 필수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파견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무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 철도, 항공, 선박 등 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관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직무대행) 본부장이 유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비상연락망 구축) 본부장 및 [별표1]에 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은 정부합동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중에는 정부합동 대책본부와 상시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전용통신망 등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관련기관의 장은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합동대책본부와 주요 교통관련기관의 분야별 대책본부간의 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부합동대책본부 상황실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간에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현장방문) ① 본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1·2차관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설·추석연휴 정기특별 교통대책의 현장방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방문은 정기대책시작일에 하며, 대통령·국무총리의 현장방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방문 장소는 고속도로 현장, 철도역사,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등으로 한다.

제25조(정기특별교통대책의 홍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특별교통 대책의 주요내용과 비상상황 발생 등을 언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통관련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정부합동대책본부가 정기특별교통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관련대책을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개별적으로 관련대책을 발표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부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교통관련기관의 장은 설·추석 연휴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의 정기특별교통대책과 비상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기보고

가. 보고회수 : 매일 2회

나. 보고시기 : 12:00 기준 14:00에, 24:00 기준 익일 08:00에 보고

다. 보고내용 : 승차권 발매현황(철도, 버스), 운항 현황(항공기, 연안여객선), 고속버스 운행현황, 교통수단별 수송실적(전국, 서울발), 고속도로 도로교통량, 주요구간별 차량운행 소요시간, 교통사고 발생현황(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도, 항공 관련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개요, 사고경위, 조치내용 및 향후계획 등을 포함) 정기특별교통대책 추진관련 주요 조치사항,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본부장이 정기보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2. 수시보고

가. 보고시기 : 상황발생 인지 후 30분 이내

나. 보고내용 : 교통수단의 운행중단사항,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의 피해발생·통행제한 및 운행 제한사항,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본부장이 수시보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다. 보고방법 : 구두보고 및 유·무선보고

제27조(비상상황 보고) ① 상황실장은 대형사고·폭우 등 비상상황 발생시 개략적인 내용을 즉시 국토교통부 장·차관 및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상세내용은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근무자를 비상상황 현장에 보내 사고현장 처리·피해 복구 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 결과보고) ① 상황실장은 정기특별교통대책의 마지막 날 24:00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기특별교통대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기특별교통대책 개요

가. 대책기간중 이동인원, 고속도로 이용차량

나. 대중교통수단 증강 및 교통량 분산대책 등

2. 정기특별교통대책 추진 결과

가. 소통상황 및 수송실적

나.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3. 정기특별교통대책 평가 및 향후과제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는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29조(근무자 교육) 본부장은 설·추석 연휴 정기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합동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정기대책시작 일 전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유공자 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특별교통대책 근무 유공자

에 대하여 당해 연말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31조(업무편람 작성) 본부장은 정기특별교통대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과장급 및 4급 공무원 상황실 근무자

대 상 직 위
가. 제2차관실 소속의 과장급(교통정책총괄과장은 제외한다) 및 4급 공무원
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소속의 과장급 및 4급 공무원

[별지서식 제1호]

□ 철도 발매 현황(대상일자 :)

※ 일자별, 합계·상·하행선 구분 작성

[총좌석수/잔여석수]

구 분		KTX	SRT	새마을	무궁화	합 계
경 부	소계	/	/	/	/	/
	하행	/	/	/	/	/
	상행	/	/	/	/	/
호 남	소계	/	/	/	/	/
	하행	/	/	/	/	/
	상행	/	/	/	/	/
전 라	소계	/	/	/	/	/
	하행	/	/	/	/	/
	상행	/	/	/	/	/
경 전	소계	/	/	/	/	/
	하행	/	/	/	/	/
	상행	/	/	/	/	/
중 앙	소계	/	/	/	/	/
	하행	/	/	/	/	/
	상행	/	/	/	/	/
동 해	소계	/	/	/	/	/
	하행	/	/	/	/	/
	상행	/	/	/	/	/
강 룡	소계	/	/	/	/	/
	하행	/	/	/	/	/
	상행	/	/	/	/	/
장 향	소계	/	/	/	/	/
	하행	/	/	/	/	/
	상행	/	/	/	/	/
기 타	소계	/	/	/	/	/
	하행	/	/	/	/	/
	상행	/	/	/	/	/
합 계	소계	/	/	/	/	/
	하행	/	/	/	/	/
	상행	/	/	/	/	/

[별지서식 제2호]

□ 고속버스 발매 현황(대상일자 :)

※ 서울발

[총좌석수/잔여석수]

<중 합>

구 분	우 등 (프리미엄 포함)	일 반	합 계
경 부	/	/	/
호 남	/	/	/
영 동	/	/	/
중부내륙	/	/	/
합 계	/	/	/

[별지서식 제3호]

《노선별》 (대상일자 :)

※ 서울발

[총좌석수/잔여석수]

구 분	우 등 (프리미엄 포함)	일 반	합 계
부 산	/	/	/
대 구	/	/	/
광 주	/	/	/
창 원	/	/	/
대 전	/	/	/
전 주	/	/	/
강 릉	/	/	/

[별지서식 제4호]

☐ 항공기 운항 현황

구 분		계 획			현 재		특기사항		기타 (지연)
		정기편	임시편	소계	운항실적	예정	결항	회항	
일자별	전국								
	서울발								
일자별	전국								
	서울발								
일자별	전국								
	서울발								
일자별	전국								
	서울발								
일자별	전국								
	서울발								
일자별	전국								
	서울발								
누 계	전국								
	서울발								

[별지서식 제5호]

☐ 연안여객선 운항 현황

구 분	계 획			운 항			통 제		
	항로	척수	소계	항로	척수	소계	항로	척수	소계
일자별									
일자별									
일자별									
일자별									
일자별									
일자별									
누 계									

[별지서식 제6호]

☐ 철도 운행 현황

구 분		평시(A)	중 강			계(B)	B/A(%)
			임시열차	객차증결	소 계		
일자별	열차수						
	량 수						
일자별	열차수						
	량 수						
일자별	열차수						
	량 수						
일자별	열차수						
	량 수						
일자별	열차수						
	량 수						
누 계	열 차						
	량 수						

[별지서식 제7호]

☐ 고속버스 운행

구 분		평시(A)	증 강	계(B)	B/A(%)
일자별	대 수				
	회 수				
일자별	대 수				
	회 수				
일자별	대 수				
	회 수				
일자별	대 수				
	회 수				
일자별	대 수				
	회 수				
일자별	대 수				
	회 수				
누 계	대 수				
	회 수				

[별지서식 제8호]

☐ 연안여객선 운항 현황

구 분		평시(A)	증 강	계(B)	B/A(%)
일자별	척 수				
	회 수				
일자별	척 수				
	회 수				
일자별	척 수				
	회 수				
일자별	척 수				
	회 수				
일자별	척 수				
	회 수				
일자별	척 수				
	회 수				
누 계	척 수				
	회 수				

[별지서식 제9호]

☐ 전국 교통수단별 수송실적(왕복)

(단위 : 천명)

구 분		철 도	고속버스	해 운	항 공	계
일자별	계 획					
	실 적					
	전 년					
	전년대비(%)					
일자별	계 획					
	실 적					
	전 년					
	전년대비(%)					
일자별	계 획					
	실 적					
	전 년					
	전년대비(%)					
일자별	계 획					
	실 적					
	전 년					
	전년대비(%)					
일자별	계 획					
	실 적					
	전 년					
	전년대비(%)					
일자별	계 획					
	실 적					
	전 년					
	전년대비(%)					
누 계	계 획					
	실 적					
	전 년					
	전년대비(%)					

[별지서식 제10호]

☐ 서울발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단위 : 천명)

구 분		철 도	고속버스	항 공	계
일자별	계 획				
	실 적				
	전 년				
	전년대비(%)				
일자별	계 획				
	실 적				
	전 년				
	전년대비(%)				
일자별	계 획				
	실 적				
	전 년				
	전년대비(%)				
일자별	계 획				
	실 적				
	전 년				
	전년대비(%)				
일자별	계 획				
	실 적				
	전 년				
	전년대비(%)				
일자별	계 획				
	실 적				
	전 년				
	전년대비(%)				
누 계	계 획				
	실 적				
	전 년				
	전년대비(%)				

[별지서식 제11호]

☐ 고속도로 도로교통량

(단위 : 대)

구 분		전년도	금년도	대 비
전 국				
수 도 권	귀 성			
	귀 경			

※ 수도권은 서울, 동서울, 서서울, 군자, 남양주, 서시흥, 남광명 톨게이트 통과 차량임

[별지서식 제12호]

☐ 주요구간별 차량운행 소요시간

구분 \ 구간		서울-대전		서울-부산		서울-광주		서울-강릉		서서울-목포	
		귀성	귀경	귀성	귀경	귀성	귀경	귀성	귀경	귀성	귀경
버스	전년 (평시기준)										
	일자별										
	일자별										
	일자별										
	일자별										
	일자별										
	일자별										
승용차	전년 (평시기준)										
	일자별										
	일자별										
	일자별										
	일자별										
	일자별										
	일자별										

※ 서서울-목포는 버스전용차로가 없어 승용차와 버스의 소요시간이 동일

[별지서식 제13호]

☐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분 일 별		발생건수	사 망 자	부 상 자	비 고
일자별	금 년				
	전 년				
	대 비				
일자별	금 년				
	전 년				
	대 비				
일자별	금 년				
	전 년				
	대 비				
일자별	금 년				
	전 년				
	대 비				
일자별	금 년				
	전 년				
	대 비				
일자별	금 년				
	전 년				
	대 비				
누계	금 년				
	전 년				
	대 비				